

청주지방법원 2024. 4. 26 선고 2023가단8111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대륜

담당변호사 이동은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4. 4. 5.

판 결 선 고 2024. 4. 26.

주 문

1. 피고 B와 피고 C(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이하 불상)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일자불상경 체결된 영업권 양도 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 B는 원고에게 20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9. 28. 체결된 별지2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.
4. 피고 B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. 12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5. 피고 B와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3.

12. 22.부터, 피고 C는 2023. 12. 21.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6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7. 제4항, 제5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별지 기재 청구원인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.

피고 B는 현재 폐업신고를 준비 중이며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못되는 것이다.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.

판사 이효두

별지